

청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단345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성(소송구조)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1. 피고와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9. 11. 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11. 21. 접수 제1237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발생 및 D의 재산처분행위

가) F 주식회사는 2017. 7. 31. D에게 28,000,000원을 약정이율 17.9%, 연체이자 27.9%, 대여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F 주식회사는 2018.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12. 13.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20. 9. 23.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은 10,565,627원, 양수 전 이자는 3,598,928원, 양수 후 이자는 10,396,228원 합계 24,560,783원이다.

나) D은 2019. 11.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9. 11. 21. 접수 제1237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2015년식)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요한 재산을 매각하였는바 책임재산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D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D과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D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가 D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어머니인 G이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D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은 2018. 12. 24.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00만 원에 매도하였고, D으로부터 그 날 저녁 21:51, 22:17 각 500만 원, 2018. 12. 25. 00:31 1,000만 원, 2018. 12. 26. 01:07 900만 원, 2018. 12. 27. 00:37 4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피고에게 다시 송금해 준 사실, G은 2018. 12. 26.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137297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G이 권리자 D 명의의 2018. 12. 26.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증 및 등기비용 영수증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G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수

